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동의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은 하수처리 공정의 일부시설물(분뇨,탈수,소각,건조)에 대하여 전문 민간 업체가 관리대행하는 사업으로,
- 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6조 및 「하수도법」 제19조 2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서 관리대행 중이며,
- 다. 금회(2015.1.1.~2017.12.31.)관리대행기간 만료에 따른 재 관리대행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부칙2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도래하는 재위탁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개요

- 시설명 :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대덕로 426(현천동)
- 시설규모 : 분뇨:4,500kl/일, 소각:150톤/일, 건조:150톤/일, 탈수:406톤/hr, 지렁이사육장:1식
- 대행기간 : 3년(2018.1월~2020.12월)
- 업체선정 : 공개경쟁입찰
- 소요예산 : 7,779백만원

나. 주요 관리대행 내용

- 하수처리 일부시설물(분뇨, 탈수, 소각, 건조) 운영에 관한 사항
- 관리대행 시설의 설비 유지관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 조건별 운영인자 및 운영자료 정리, 보고에 관한 사항

다. 관리대행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19조의2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라운영의 위탁)

라. 관리대행 추진현황

차수	계약기간	관리대행 기관	비고
1차	2003.01. ~ 2005.12	한솔이엠이	의무운전
2차	2006.01. ~ 2008.12.	한솔이엠이	재관리대행 (공개모집)
3차	2009.01. ~ 2011.12	(주)티에스케이워터	재관리대행 (공개모집)
4차	2012.01. ~ 2014.12	(주)삼천리엔바이오	재관리대행 (공개모집)
5차	2015.01. ~ 2017.12	(주)대양엔바이오	재관리대행 (공개모집)

마. 관리대행 추진 필요성

- 「난지·중량물재생센터 조직 효율화 계획」 [시장방침 제 502호('08.9.12)] 에 따라 분뇨처리 및 슬러지탈수 등 일부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대행 중으로 시설의 운영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나,
- 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대규모의 운영인력(46인)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환경기초시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한 민간 전문업체가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을 관리대행 함으로써 양질의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19조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공개경쟁입찰(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준용)

※ 작성자 :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 이진호(☎ 300-8546)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성과보고서

□ 관리대행 개요

○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19조의 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 추진경과

- '03.01. ~ '05.12. : 1차 관리대행, 한솔이엠이
- '06.01. ~ '08.12. : 2차 관리대행, 한솔이엠이
- '09.01. ~ '11.12. : 3차 관리대행, (주)티에스케이워터
- '12.01. ~ '14.12. : 4차 관리대행, (주)삼천리엔바이오
- '15.01. ~ '17.12. : 5차 관리대행, (주)대양엔바이오

○ 사업내용

- 물재생시설 일부시설물의 운영관리를 민간 전문업체에 관리대행
 - 대상시설 : 4개공정[분뇨(지렁이포함)·탈수·소각·건조 시설]
 - 대행범위 : 대상시설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대행기간(금회) : '15.1.1 ~ '17.12.31(3년)

○ 사업현황

구 분	사업예산 (백만원)	운영 현황				비 고
		분뇨 (k l /일)	탈수 (톤/일)	소각 (톤/일)	건조 (톤/일)	
2015년	6,662	4,133	386	125	140	
2016년	7,081	3,909	395	135	127	
2017년	7,081	3,663	392	127	141	

□ 관리대행 사업 성과평가

○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목표 : 90점 이상(탁월)
- 근거 : 하수도법 시행령 15조 4(성과평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환경부

○ 추진실적

- 관리대행 기간 연도별 목표(계획) 대비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목표대비 달성율
2014년	90점 이상	90.3점	100%
2015년	90점 이상	97.4점	100%
2016년	90점 이상	97.1점	100%

- 연도별 성과지표 대비 실적(최근 3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평 균		90.3	97.4	97.1
1.대행업체 (운영요원)	근무년수	100	100	100
	자격취득율	80	80	80
	교육시간	54	54	60
2.분뇨처리시설	악취배출시설 기준준수율	140	140	140
3.서비스질	재해발생빈도	100	100	100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노력	140	140	100
	환경서비스질 제고노력	0	60	100
4.하수찌꺼기 및 재이용	유해화학물질 제고노력	100	100	100
	소각시설 처리율	100	100	100
	건조시설 처리율	-	100	100
	소각시설 가동율	100	100	100
	건조시설 가동율	-	100	100
	함수율 처리율	80	100	100
	위생처리 가동율	90	90	80

- 연도별 예산 대비 집행 및 정산 실적

구 분	예산(천원)	집행(천원)	집행율(%)
2015년	6,662,000	6,658,883	99.9
2016년	7,081,000	7,073,990	99.9
2017년 6월	7,081,000	3,627,990	51.2

□ **관리대행 사업 향후계획**

○ **성과평가 결과 요약**

- 환경부 『공공하수도관리업무 대행지침의 대행성과 평가기준 및 요령』에 근거한 성과평가 점수가 평균 90점 이상으로 매우 우수함

○ **개선(발전)방안, 향후 추진방향 · 계획**

- 분뇨처리 효율적 공정관리와 시설물 예방정비를 통한 처리효율 제고
-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을 향상으로 슬러지처리량 증량
- 슬러지 탈수케익 함수율 저감 등을 통한 경제적 운영
- 철저한 관리대행 운영계획서 검토 · 승인(월별)
- 정기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통한 공정별 중점관리(반기)